

#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1565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20년 5월 25일

제 출 자 : 서울특별시장

## 1. 제안이유

2020년 9월 개관 예정인 ‘스페이스 살림’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가. 시장이 설치·운영하는 여성관련시설에 여성창업 활성화, 성평등·돌봄 환경 조성, 여성·가족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스페이스 살림을 추가함(안 제4조).

나. 스페이스 살림의 주요기능으로 창업공간, 자금, 장비 등 여성 창업자 육성에 필요한 지원, 여성 창업자 판로 개척 및 투자 유치 지원, 자녀 돌봄 서비스 제공, 가족 소통 활성화 사업 등을 규정함(안 제5조의2).

다. 스페이스 살림의 이용료 및 이용료 감면사항을 규정함(안 제18조, 제19조 및 별표 6의2).

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양성평등기본법」 제45조

나. 예산조치: 비용추계서 참조

다. 기 타

1) 신·구조문 대비표: 별도 첨부

2) 입법예고('20. 4. 2.~4. 22.) 결과: 의견없음

##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에 제1의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6호 중 “제 1호 내지 제5호”를 “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1의2호”로 한다.

1의2. 스페이스 살림: 여성창업 활성화, 성평등·돌봄 환경 조성 및 여성·가족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

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5조의2(스페이스 살림의 기능) 제4조제1의2호에 따른 스페이스 살림의 주요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창업공간, 자금, 장비 등 여성 창업자 육성에 필요한 지원
2. 여성 창업자 판로 개척 및 투자 유치 지원
3. 일·생활 균형 지원을 위한 자녀 돌봄 서비스 제공
4. 가족 소통 활성화 사업 추진
5. 정보통신분야 성별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 및 창작활동 지원

6. 그 밖에 여성창업 활성화, 성평등·돌봄 환경 조성 및 여성·가족 역량 강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추진

제18조제1항에 제1의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의2. 스페이스 살림: 별표 6의2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금액

제19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시장은 제18조제1항제1의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스페이스 살림의 이용료를 면제하거나 줄일 수 있다. 다만, 창업공간은 제외한다.

1. 여성창업 활성화를 위하여 시가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(자치구는 제외한다): 기본시설 및 부속설비 이용료의 100분의 50을 줄인다. 다만, 연수시설의 경우에는 이용료의 100분의 20을 줄인다.
2. 「서울특별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이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: 기본시설 및 부속설비 이용료의 100분의 50을 줄인다. 다만, 연수시설의 경우에는 이용료의 100분의 20을 줄인다.
3. 「양성평등기본법」 제51조에 따라 여성의 권익향상 및 복지증진 등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가 연수시설을 이용하는 경우: 이용료의 100분의 20을 줄인다.

제25조 중 “제6호까지”를 “제6호까지 및 제1의2호에”로 한다.

별표 6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6의2]

스페이스 살림 이용료 부과 기준(제18조제1항 관련)

구 분		이용료 부과·징수 기준(단위)
창업공간 이용료	창업공간	2,280원~20,000원( $m^2$ 당/1개월)
기본시설 이용료	공유좌석	10,000원~50,000원(1개월)
	공유부엌	7,500원~30,000원(1시간)
	다목적홀	52,800원~160,000원(1시간)
	교육장	25,000원~65,000원(1시간)
연수시설 이용료		40,000원~230,000원(1박)

※ 그 밖의 부대시설 이용료 및 관리비는 원가수준 등을 고려하여 청구 가능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<p>제4조(여성관련시설의 종류) 이 조 례에 따라 시장이 설치·운영하는 여성관련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 이 구분한다.</p> <p>1. (생략)</p> <p><u>&lt;신설&gt;</u></p> <p>2. ~ 5. (생략)</p> <p>6. 그 밖에 <u>제 1호 내지 제5호와 유사한 시설로서 여성의 사회참 여 및 성평등을 위해 시장이 필 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</u></p> <p><u>&lt;신설&gt;</u></p>	<p>제4조(여성관련시설의 종류)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1의2. <u>스페이스 살림: 여성창업 활성화, 성평등·돌봄 환경 조성 및 여성·가족 역량 강화를 목적 으로 하는 시설</u></p> <p>2. ~ 5. (현행과 같음)</p> <p>6. 그 밖에 <u>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1의2호</u>----- ----- ----- --</p> <p><u>제5조의2(스페이스 살림의 기능) 제 4조제1의2호에 따른 스페이스 살 림의 주요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 다.</u></p> <p><u>1. 창업공간, 자금, 장비 등 여성 창업자 육성에 필요한 지원</u></p> <p><u>2. 여성 창업자 판로 개척 및 투자 유치 지원</u></p> <p><u>3. 일·생활 균형 지원을 위한 자</u></p>

현행	개정안
<p>제18조(이용료의 부과·징수) ① 시장은 여성관련시설의 교육과정 및 부대시설을 이용하는 사람(이하 “이용자”라 한다)에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이용료 등을 부과·징수하여야 한다.</p> <p>1. (생략)</p> <p><u>&lt;신설&gt;</u></p> <p>2. ~ 4. (생략)</p> <p>② (생략)</p> <p>제19조(이용료의 감면 등) ① (생략)</p> <p><u>&lt;신설&gt;</u></p>	<p><u>녀 돌봄 서비스 제공</u></p> <p>4. <u>가족 소통 활성화 사업 추진</u></p> <p>5. <u>정보통신 분야 성별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 및 창작활동 지원</u></p> <p>6. <u>그 밖에 여성창업 활성화, 성평등·돌봄 환경 조성 및 여성·가족 역량 강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추진</u></p> <p>제18조(이용료의 부과·징수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1의2. 스페이스 살림: 별표 6의2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금액</u></p> <p>2. ~ 4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19조(이용료의 감면 등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② 시장은 제18조제1항제1의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스페이스 살림 이용료를 면제하거나 줄일 수 있다. 다만, 창업공간은 제외한다.</u></p>

현행	개정안
<p>② (생략)</p> <p>제25조(관리·운영의 위탁 등) 시장은 제4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 해당하는 여성관련시설의 관리·운영에 관하여 그 사무를 법인 또는</p>	<p>1. <u>여성창업 활성화를 위하여 시가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(자치구는 제외한다): 기본시설 및 부속설비 이용료의 100분의 50을 줄인다. 다만, 연수시설의 경우에는 이용료의 100분의 20을 줄인다.</u></p> <p>2. 「서울특별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여성기업이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: 기본시설 및 부속설비 이용료의 100분의 50을 줄인다. 다만, 연수시설의 경우에는 이용료의 100분의 20을 줄인다.</p> <p>3. 「양성평등기본법」 제51조에 따라 여성의 권익향상 및 복지증진 등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가 연수시설을 이용하는 경우: 이용료의 100분의 20을 줄인다.</p> <p>③ (현행 제2항과 같음)</p> <p>제26조(관리·운영의 위탁 등) -----제6호까지 및 제1의2호에-----</p>

현행	개정안
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.	----- -----.

# 비 용 추 계 서

## I. 비용추계 요약

### 1. 비용발생 요인

#### 1) 스페이스 살림 운영 및 관리 비용

- 스페이스 살림의 운영주체를 여성가족재단(고유사무)으로 결정(행정1부시장 방침 제348호, 2017.12.26.)함에 따라 출연금으로 경비 지원

※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에 의거하여, 관리비가 자체수입을 초과할 경우 시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음.

▶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(행정재산의 관리위탁) : ⑥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이용료를 징수하여 이를 관리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거나, 그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이용료 수입이 증대된 경우 그 증대된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. ⑦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### 2. 비용추계의 전제

1) 근거 : 「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5조(비용추계의 방법 등)

2) 기준가격

-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

- 스페이스 살림 운영원가계산 분석보고서('19.10, 성도이현회계법인)

3) 추계기간 : 의안 시행일로부터 5년간('20~'25)

### 3. 비용추계의 결과(세출)

(단위 : 천원)

구분		연도					합계
		1차년도 ( '20 )	2차년도 ( '21 )	3차년도 ( '22 )	4차년도 ( '23 )	5차년도 ( '24 )	
스페이스 살림 (세출, 출연금)	○ 운영지출(A)	3,969,644	5,799,012	5,914,992	6,033,292	6,153,958	27,870,898
	○ 운영수입(B)	249,548	744,839	759,736	774,930	790,429	3,319,482
비용(A-B)		3,720,096	5,054,173	5,155,256	5,258,362	5,363,529	24,551,416

#### 4. 재원조달 방안

(단위 : 천원)

구분 \ 연도	1차년도	2차년도	3차년도	4차년도	5차년도	합계
스페이스 살림 (세출, 출연금)	3,720,096	5,054,173	5,155,256	5,258,362	5,363,529	24,551,416
민간						
기타						
합계	3,720,096	5,054,173	5,155,256	5,258,362	5,363,529	24,551,416

#### 5. 덧붙이는 의견

- 1차년도('20년) 예산은 스페이스 살림 개관 시기('20.9월)을 고려하여 편성되었음.
- ※ 개관 준비 시기를 고려하여 인건비는 평균 6개월 편성하였으며, 공간조성을 위한 장비 및 집기류 구입비가 포함되어있음.

#### 6. 작성자

-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우효정(02-2133-5037)

### II. 비용추계의 상세내역

#### 1. 스페이스 살림 운영 및 관리 비용

- 1) 사업비 : 여성 스타트업 발굴 및 육성, 가족·성평등 돌봄 공간 운영 등
- 2) 일반관리비 : 인건비, 기본경비(4대보험료, 선택적복지비, 사무경비 등)
- ※ 인건비(신규 49명) : 스페이스 살림 운영단장(1명), 사업인력(21명), 시설인력(27명)

연도	항 목	내 역	예상금액 (천원)	산출기초
총계			24,551,416	
2020	비용(A-B)		3,720,096	
	운영 지출(A)	사업비	2,814,361	▶ 여성 창업자 발굴 및 육성, 가족 및 돌봄 공간 프로그램 운영, 여성가족 대상 창작·공간 운영 등
		일반관리비	1,155,283	▶ 스페이스 살림 운영단 직원 인건비 등 - 운영단장 1, 사업인력 21, 시설인력 27
		소계	3,969,644	
	운영 수입(B)		249,548	▶ 대관수입, 연수시설 수익, 주차장 수입, 임대수입 등
2021	비용(A-B)		5,054,173	
	운영 지출(A)	사업비	2,889,621	▶ 여성 창업자 발굴 및 육성, 가족 및 돌봄 공간 프로그램 운영, 여성가족 대상 창작·공간 운영 등
		일반관리비	2,909,391	▶ 스페이스 살림 운영단 직원 인건비 등 - 운영단장 1, 사업인력 21, 시설인력 27
		소계	5,799,012	
	운영 수입(B)		744,839	▶ 대관수입, 연수시설 수익, 주차장 수입, 임대수입 등

연도	항 목	내 역	예상금액 (천 원)	산출기초
2022	비용(A-B)		5,155,256	
	운영 지출(A)	사업비	2,947,413	▶ 여성 창업자 발굴 및 육성, 가족 및 돌봄 공간 프로그램 운영, 여성가족 대상 창작·공간 운영 등
		일반관리비	2,967,579	▶ 스페이스 살림 운영단 직원 인건비 등 - 운영단장 1, 사업인력 21, 시설인력 27
		소계	5,914,992	
	운영 수입(B)		759,736	▶ 대관수입, 연수시설 수익, 주차장 수입, 임대수입 등
2023	비용(A-B)		5,258,362	
	시설 운영	사업비	3,006,362	▶ 여성 창업자 발굴 및 육성, 가족 및 돌봄 공간 프로그램 운영, 여성가족 대상 창작·공간 운영 등
		일반관리비	3,026,930	▶ 스페이스 살림 운영단 직원 인건비 등 - 운영단장 1, 사업인력 21, 시설인력 27
		소계	6,033,292	
	운영 수입(B)		774,930	▶ 대관수입, 연수시설 수익, 주차장 수입, 임대수입 등
2024	비용(A-B)		5,363,529	
	운영 지출(A)	사업비	3,066,489	▶ 여성 창업자 발굴 및 육성, 가족 및 돌봄 공간 프로그램 운영, 여성가족 대상 창작·공간 운영 등
		일반관리비	3,087,469	▶ 스페이스 살림 운영단 직원 인건비 등 - 운영단장 1, 사업인력 21, 시설인력 27
		소계	6,153,958	
	운영 수입(B)		790,429	▶ 대관수입, 연수시설 수익, 주차장 수입, 임대수입 등